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3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08. 19.
3. 회 부 일 : 2024. 0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 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정형을 현행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3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1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생략) 2. <u>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3. ~ 9. (생략)	<u>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154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9. (현행과 같음)
---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등을 말하는 것으로¹⁾,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비교>

(단위 : 명)

	평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자동차	1.4	1.4	1.4	1.4	1.3	1.2
원동기	2.1	1.9	2.1	2.0	2.6	1.9
(무면허)	3.8	3.9	3.6	4.9	3.2	3.6

※자료: 경찰청

이에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교통의 안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등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 부분은 15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20배 상향된 것에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의3.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운전의 범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3배 상향되는 것에 그쳤음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범정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무면허운전 처벌규정 관련 도로교통법 연혁>

연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1973년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1년 이하 징역, 15만원 이하 벌금
1981년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1년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1995년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
1999년 ~ 현재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자료: 경찰청

다만, 현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²⁾, 개정안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범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범정형도 동일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생략)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 9. (생략)

참고로 경찰청은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